

제42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7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2.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우주항공청
3. 2024회 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4. 2024회 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상정된 안건

1.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3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2.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3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우주항공청
3. 2024회 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3
4. 2024회 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3

(09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조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소위는 제가 선출된 이후의 첫 회의입니다.

특히 쟁쟁하신 우리 선배 위원님이 딱 앞에 계시니까 더 부담이 되고요 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결산심사하는 동안에 내용은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심의하되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합니다. 이 결산심사 내용이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의를 잘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기관에서 지난번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다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도 하시고 서면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실에서 심사자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심의 방식은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만 보셔 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한번 좀 상세히, 종류는 어떤 거고 각 기관에서는 뭘 해야 되고 각 기관의 부담은 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84조 2항에 따라서 결산 결과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회가 징계라든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보시면, 나눠 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은 국가 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 변상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징계의 종류는 과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권자가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시정은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주의는 그 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도개선은 법령이나 제도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도개선 요구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는 결산상 시정요구 변상책임 말씀드린 것 이외에 비교적 국회 입법기관의, 헌법기관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폭넓은 의미에서 시정요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상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러면 국회의 정책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국회 결산상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1차관 소관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잠깐만요.

회의는 심사 편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순대로 진행하고 각 부처, 기관별로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및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우주항공청

3.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4.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09시15분)

○**소위원장 조인철**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언론인 계신가요? 소위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행정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1차관 소관의 정책기획관부터 운영지원과까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를 다 보는데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는, 정부 측과 이견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차관 소관 사안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황정아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감사실이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가지고 직원들 열람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공감사법 등에 따라서 감사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남용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감사계획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감사반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실상 사찰에 가까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황정아 위원은 연구재단,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남용한 상임감사 등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징계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실무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까지도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차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과기부 1차관 구혁채입니다.

황정아 위원님께서 징계와 시정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 정부 측은 시정을 해 주시면 어떤가 견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징계,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 시정을 좀 견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11페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황정아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10페이지 걸 보시면 거기에는 저도 비슷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논리로 여기는 시정·제도개선을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감사관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짚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시정하고 제도개선을 했어요.

만약에 11페이지에 있는 게 징계까지 가능하다면 비슷한 논리로 10페이지 것도 징계까지 가야지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징계를 넣든 둘 다 시정으로 내리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 최수진입니다.

이 건이 반복되는 건이 아니라면 저는 시정을 해 놓고 이것이 안 될 경우 징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시정할 건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지금 NRF에 대해서 이 건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착수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위법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나 이런 등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이해민 위원님하고 최수진 위원님 말씀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하나하고 1차 경고를 통해서 자체 시정하게 한 후에 징계 조치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훈기 위원** 무척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앞에 하고 맞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10페이지의 이해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관실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AI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저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10번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10번은 이미 지난간 거고.

이것을 수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지 마시고. 그렇게 건드리면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이해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과 제도개선.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으로 앞에서 심사한 내용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1차관부터 혁신본부 소관까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는 건입니다.

15쪽, 1번 항목인데요.

내역사업인 소부장 실증평가 사업이 계획과 달리 연구기간도 증가하고 연구비도 증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저희 수용했는데요.

○전문위원 임명현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용이라고 들어서……

19페이지의 7번 항목인데요. 이것도 수용한다고 했지만 내용상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숙 교수가 총괄한 디지털 심리치료제 개발사업이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고 특혜나 카르텔 의혹이 있으므로 연구비 사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성과 없는 과제와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며 연구책임자 및 부적격 참여기관에 대해 배상 책임 및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유형을 보면 주의로 돼 있는데 시정요구의 문구를 보면 징계라는 말도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주의 의견에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여기 다른 위원님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지금 정부 측에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주의로 수용하는 것……

○**전문위원 임명현** 여기 내용에 ‘연구책임자 징계, 배상 책임’ 이런 문구들이 있어서 문구의 내용만 보면 주의로 그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보고드린 건데, 그러면 주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워딩을 좀 바꿀까요, 이해민 위원님?

주의라고 해 놓고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문구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전문위원께서 아마 뒤에 ‘배상 책임 및 징계’라는 단정적 표현 때문에 약간 결리시는 모양이라서요.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하며 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부적격 참여기관에 대해 배상 책임 및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민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20쪽 10번 항목입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인데 개인 동의 기반으로 검체 및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표준동의서·패스트트랙 도입, 국민 캠페인 실시, 질환·권역별 전략 마련, 진척 보고 강화 등 참여자 모집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이 뭐냐면 대비책 마련, 그러니까 예상이 다 되고 있었어요. 이 해당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 문제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지금 주의 기준을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잖아요.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대비책이, 그러니까 참여자 유인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의로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로 해야 된다?

정부 측 받기 힘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원인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참여자 모집이 보통 연말에 건강검진할 때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 그런 사안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대부분 협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주의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담당자의 특별한 주의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실수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 사업이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사업이 이제 첫 시작이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첫 시작이어서 담당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감사합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은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명칭도 있고 규모도 가늠할 텐데 이게 결산하는 건데 예산 규모나 거의 다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좀 더 판단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 액수가 안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없어요, 사업명만 있고.

○**전문위원 임명현** 통상적으로 예산심의할 때는 소위자료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이훈기 위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소위원장 조인철** 이훈기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결산심사할 때 심사자료 양식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을 다 표시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전문위원께서 설명할 때?

○**전문위원 임명현**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바로 찾아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소위원장 조인철** 보고할 때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인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2024회계연도 얼마였다부터.

○**전문위원 임명현** 그게 다 가능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 그래요?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명현** 예.

○이훈기 위원 아니, 예산 규모도 모르고 이걸 결산심사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문위원 임명현 주로 결산에.....

○이훈기 위원 내용만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21쪽 12번 항목입니다.

R&D 예산 감액에 따른 계속과제 조정 관련된 사항인데요.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단 과제를 최소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과 두 번째, 2024년 R&D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2026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초과학 분야의 타격이 심대한 수준으로 기초과학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은 제도개선으로 분류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왜 주의를 빼자고 그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삭감에 따른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과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연구 중단을 방지한다든가 그다음에 과제평가를 좀 더 엄밀하게 연계한다는 등의 조치계획을 아마 하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 발표를 제도개선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분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저는 이걸 조인철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이 지적을 해놓으셔 가지고 말씀하실 줄 알고 그냥 저의 의견을..... 있지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인데 이게 연구 중단 조치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 발생 우려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2024년도에 R&D 예산이 줄면서 가장 큰 풀뿌리 연구자들이 진짜 말살되다시피 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도개선도 곧 내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이 앞으로 잘하실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재발할까 봐 지금 주의로 들어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훨씬 더 센 시정요구유형을 하고 싶은데 아마 이게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이었을 거다라는 수준에서 이 정도,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냥 받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주의?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여기 주의·제도개선 다. 2개는 안 돼요?

○전문위원 임명현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이 세 꼭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정해

주셔야 되는데……

○소위원장 조인철 아, 각각이요?

○전문위원 임명현 지금 첫 번째 항목에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의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제도개선 쪽으로 정리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어떠신가요, 정부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미래인재정책국입니다.

23쪽의 3번 항목입니다.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사업 관련한 건데 대학 연구실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대학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습형 의무교육으로 강화하며, 위험작업 사전 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26쪽 8번 항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인데 프로그램 목표 II-5의 성과지표로 과학관 총방문객을 설정하였는데 측정산식을 임의로 변경해서 실적을 과다 보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립과천과학관이 재무 당국과의 협의사항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맞게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은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했다기보다는 재정 당국이랑 협의해서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임명현 쪽 넘어가서 38쪽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31쪽 아니고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앞부분은 없어서……

○소위원장 조인철 31쪽도 뭐 있는데요. 31쪽, 연구성과혁신관 쪽의 2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건 안 해요? 수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31쪽, 위원장 말씀하신 2번부터 그 뒤의 4번까지입니다. 박정훈……

○**소위원장 조인철** 일단 전문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임명현** 그러면 2번부터 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인데 연구용역 부정계약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연구비 부정 집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주의입니다.

다음, 32페이지의 3번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인데……

○**소위원장 조인철** 이것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임명현** 내용은 약간씩 다른데 시정요구사항은……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연계해서 봐야 될 내용이냐고? 안 그러면 1건씩 가고.

○**전문위원 임명현**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비슷한 지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지질자원연구원은 연구원 출장여비 중복수령 문제로 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지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은 주의로 되어 있는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분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의 내용도 이러한 연구비 부정 집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해라, 마련하라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떠한 계약을 할 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항들을 좀 더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저는 하루이틀 R&D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원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아야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 여쭙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특히 이번 같은 이 세 가지 건이 주로 출연연구원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일부 온정적인 관리라든지 일부 연구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상 감사

를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하여 이런 데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건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소위원장 조인철 이게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엄청 발생하는 거냐고요? 일상적으로 한두 건 발생하고 서너 건 발생하는 거야 항상 예가 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기관별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별로 따져 봤을 때는 매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확실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정부 측 의견……

○이훈기 위원 저는 그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의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그려면 당초대로 주의로 가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38쪽 11번 항목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인데 국내 유일의 지질조사 전문기관이지만 현재 포항 외에는 상주 연구조직이 없어서 특히 복합지질 현안이 집중된 제주지역의 특화 자원 연구와 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는 제주의 지질자원 연구를 위하여 제주 지역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 주신 제주 지역조직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약간의 단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과 제주와 같이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해 나가면서 지역조직의 신설 여부를 좀 더 판단하도록 여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말씀……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제기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제기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처음입니다.

○김현 위원 처음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김현 위원 이 조직을 신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뭐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조직을 신설할 때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부

지의 확보 문제라든지 재원에 관한 문제들을 좀 더 절차적으로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적 검토사항을 진행하면서 판단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절차적인 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계획을 잡고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워딩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주 지역조직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김현 위원** 방안 마련 쪽이 맞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등’ 넣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전문위원 임명현** 아니요.

40쪽입니다.

40쪽, 13번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사업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2개 공사 함께 예타 기준 규모를 초과하게 된 특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 시정보다는 주의로 분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충분히 해 왔고요. 어떤 법률상이라든지 절차상의 부당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주의로 해 주시기를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위법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지 않습니다.

○**최수진 위원** 실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추징이나 회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해당 없습니다.

○**최수진 위원** 해당 없어요? 그러면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최수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저희가 앞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27쪽, 9번입니다.

프로그램 II-4와 관련된 건데 국립중앙과학관이 분기별 개선계획 수립하고 이행상황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 시정요구유형으로 주의·제도개선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은 둘 중의 하나만 채택해서 보내 달라 이런 게 있어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결위에서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 제도개선으로 분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성과목표라든지 분기별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나가면서 관람객 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산식을 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분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되 이 국립중앙과학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중앙과학관이 제대로 시설이 있는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지금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보고체계 마련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성과 목표 수립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해서 제도개선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마지막입니다. 50쪽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또 있어요?

○전문위원 임명현 혁신본부 소관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그러면 1차관 이석하고 혁신본부장 들어오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제가 오늘 첫 소위 참석해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 주신 사항들을 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꼭 소위 위원님들 기억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돈해 주세요.

혁신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한 달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시간은 없기는 하지만 짧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우선 민간에서만 쭉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막상 부처에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눈 앞에 혁신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50쪽의 6번 항목입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 관련해서 자체 심의위나 운영규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지침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두 번째 항목입니다. 모든 연구기관이 장비 도입 및 활용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할 것.

세 번째입니다. 나눔장비이전지원사업 예산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유·저활용 장비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여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대로 어떤 기관들은 시설장비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들은 운영규정 같은 것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곳은 실태조사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미흡 기관들에 자체적으로 전부 다 통지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나눔이전 실적 이것들은 실태를 보니까 서로 장비를 주고받는 횟수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고받으면서도 소위 말해서 주고받는 이사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비용 자체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집행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태를 보니까 24년도보다 25년도는 현재 정상 집행돼 있고 26년도는 집행률이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집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집행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소위원장 조인철 실적은 느는데 예산은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작년에는 협약이 조금 지연돼서 그런 면이 있었고요. 올해는 그 부분이 잘 진행돼서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꼭 그렇게 들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예산이 적정한데,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약간 협약 지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 이해민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 이해보다는요 시정요구유형을 뭘로 할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이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저희는 수용을 합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수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 최수진 위원 수정 수용하실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 주의·제도개선인데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저희가 원하기는 하지만 주의를 주셔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 최수진 위원 저는 왜냐하면 2022년도부터 했는데 15개 기관의 운영규정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돼 있다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도 아니고 표준지침마저 없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제도개선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 이해민 위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전부 제도개선이에요? 지금 여기 주의가 왜 들어가 있지요, 전문위원?

○ 최수진 위원 주의 있어요. 주의·제도개선 둘 다.

○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명현 그러면 정리하면 3개 지적사항인데 첫 번째만 주의고 나머지 2개는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 소위원장 조인철 예.

○ 전문위원 임명현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고생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은 2차관 소관인데 잠깐 자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진행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차관 소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수용한 부분인데요. 특히 여러 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걸 정부가 수용했던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고 불수용했던 내용 중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거는 불수용이라기보다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예결위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예결위 요청사항인데 이런 동일한 사안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인데요. 이게 광역·지자체 간의 집행 편차도 있고 예산은 3년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또 이걸 관리해 주는 전문기관 사업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생활서비스 모델로 정착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기관 사업관리 예산을 확보할 것 이거는 최민희 위원은 주의라든가, 최형두 위원은 제도개선, 또 아래의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 운영의 효율성 강화할 것 이거는 김현 위원이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위의 내용을 주의로 할지 또는 제도개선으로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에 전문기관 NIA의 사업관리 예산은 저희가 올해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지적해 주신 취지에 맞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과 관련돼서 김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제도개선을 통해서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은 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돼 있는데 주의 이하로 좀 낮춰 주시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시정은 못 받고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충분히 그렇게 보완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현재 적용되는 사례가 되게 적어요, 전체 규모에 비해서. 광역·기초단체가 몇 개인데, 지금 몇 군데 이거 되고 있어요, 스마트빌리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17개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군데인데 몇 개가 하냐고요? 지자체가 253개 아닙니까, 자치단체로 놓고 보면? 그런데 규모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데 17개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2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몇 개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스마트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장 조인철 직위, 성함 말씀하고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엄열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 대표적인 스마트빌리지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40개 지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주요 우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17개를 넘어서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 위원 그것도 아주 미미한 거지요, 전체 규모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조금 미미합니다만……

○김현 위원 과장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기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

털 격차 해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김현 위원** 2022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사업 영역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아닌 거지요, 사실은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저희가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24년에 78개 지자체 했던 거를 올해는 또 90개로 계속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시정하고 주의하고 가장 큰 차이는 시정은 다시 추정을 할 것이냐,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의에 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 정도 사안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주의나 제도개선 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주의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시정은 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이훈기 위원** 주의.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4쪽입니다.

예비비 배정·집행 시에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사업 목적 외 예산 전용 재발 방지 관련 내용입니다.

예비비 신청하고 배정 이전에 AI 서울 정상회의하고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국가재정법 51조의 예비비 사용 관련 규정을 조금 위반한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 놓고도 예비비 부족을 이유로 초기대AI생태계 확산 지원 사업에 또 AI 데이터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또 5.8억을 전용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당초 편성된 예산의,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민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다른 사업 예산을 통해서 하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 편성 목적에 맞게 전용하지 않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 정상회의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스케줄하고 좀 안 맞는, 시점상 안 맞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 당국하고 예비비 신청 전에 기정 예산 중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래도 없으면 예비비로 신청하라는 이런 지침상의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

가재정법상의 그런 규정을 완전히 위배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재정 당국하고도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이해민 위원** 안 그래도 과기부, 방금 차관이 말씀하신 상황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연초부터 영국 정부, 1월 달에 제안을 한 거잖아요. 연초부터 사실 이 해당 행사가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모르던 바가 아니거든요. 중간에 예비비 전용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몰랐는데 갑자기 생겼어요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1월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시정을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징, 회수, 원상복구 그다음에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시정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AI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걸 감안했을 때 주의로 내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그럼 주의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입니다.

부정수급이나 중복 참여 기업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라 그다음에 제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이견이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견이 있다기보다도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택일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소위원장 조인철** 택일?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럼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할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생략을 하고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가급적이면 정부 부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렇게가 아니고 주의와 제도개선 2개 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갈라쳐 주기만 하시면 되지요. 그 안에서 어떤 건 주의고 어떤 건 제도개선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다 수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낮춰 줄 수는 없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정부는 어떤 처분이든 주의·제도개선은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주의·제도개선 이 두 가지 중에는 저희가 둘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까지 포함된 부분은 이해민 위원님께서 낮춰 주신 것처럼 그 부분만 좀 한 단계 낮춰 주시면……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것만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수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한 거에 대해서는 주의나 제도개선 지금 세 꼭지잖아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조인철** 이 세 꼭지 중에 갈라쳐서 이거는 주의, 이거는 제도개선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 수용을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조인철** 넘어가시지요.

다 끝났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11쪽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2쪽도 선택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견 있는 거 한 꼭지였는데, 2차관 라인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견만 놓고 보면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12쪽 하나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1기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 2기 위원 구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데이터분쟁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황적으로 AI전략위원회하고 기존의 데이터정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전략위원회 출범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2차관 라인 끝났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이해민 위원** 소위원장님, 부대의견 과기정통부 쪽에 하나 달 게 있는데 언급을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그러면 과기정통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이해민 위원 부대의견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정부 쪽에서 다 제가 넣었던 것들을 수용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은 어느 부분이냐면 해외 국제협력 R&D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1차관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는 한데, 1차관님께서 안 그래도 미국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특히 해외 국제협력 R&D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해외가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저자야, 이 사람이 특허를 가져’ 이런 기준이 다릅니다, 양쪽이.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요.

저의 부대의견은 국제협력 R&D 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지금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내년도 사업 예산을 짤 때에는 반드시 해외 R&D 사업 지적재산권 규정과 맞춰서 진행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지금 이야기 들으셨지요? 늦게 들어오셔서 잘 못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말씀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해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안들을 좀 더 강조해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과제 준비하고 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저도 부대의견 하나……

○소위원장 조인철 이거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문구는 집어 넣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초연구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합(sum)은 늘었는데 너무 큰 과제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한 풀뿌리 연구나 기초연구가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저는 기초연구비를 늘리지 않으면 R&D의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불만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바는 기초연구비를 더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연구비를 확대시키고, 자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R&D를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AI를 되게 지금 많이 하고 GPU 칩도 사고 하잖아요. 특

히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가 전 세계 톱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그 의료 데이터를 전 국민한테 확산시키고 또한 의사들이, 의사들 많이 뽑는다고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의료 수준을 좀 평준화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먹고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기초연구 확충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해서 우리 의료산업을 좀 발전시키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걸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 말씀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기초연구 부분에 대한 의지 내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 사항에 대한 말씀 주신 의견은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습니다만 기초연구 부분을 대폭 증액하는 계획으로 있고 또한 특히나 풀뿌리 연구라든지 기본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개수와 규모도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담은 방안들을 저희들이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주신 말씀들을 잘 담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것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문구 작성해서 넣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의료 AI 부분도 위원님 취지에 맞게 그렇게 부대 의견 문안을 협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다른 말씀.....

그러면 과기정통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및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통위 소관 결산 자료 보시겠습니다.

방통위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항목 위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연례적인 수납률이 저조한데 이걸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법스팸 전송 등에 대해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에서 연례적으로 징수율이 낮습

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 등께서 제도개선, 주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주희 위원은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무처장직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장기 미수납 채권의 지속적인 독촉, 압류, 추심 및 법령상 징수가 불가한 채권을 매년 조사하여 결손 처분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완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수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받을 때 좀 많이 이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스팸 사업자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수납률이 거의 다 영 점 몇 % 이 정도 수준인데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낮은지.

○**소위원장 조인철** 이와 유사한 다른 부처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그런 것 수납률은 어떻게 돼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성함도 발표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타 부처 사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송통신사무소에 대책반을 마련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징수율 자체는 저희가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과기부로부터 이관받은 부분이 있고 누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럼 사전에 조율 같은 건 없나요? 과기부에서 데이터를 받고 미리 의견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데이터 받아서 방통위가 방통위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아닙니다.

○**김현 위원** 형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19년도에 과기부로부터 미수납된 과태료 전액을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쭉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원장 조인철** 여기 자료는 전부 방통위에서 보고하고 징수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이관받은 걸 포함해서 그렇고요. 지금

당해 징수율은 22년, 23년도, 24년도 다 98%에서 100%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럼 여기 수납률 0.4 이건 뭐예요? 연도별로 지금 2022, 2023, 2024 이렇게 돼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처음에 이관받은 금액이 너무 많으면 계속……

○소위원장 조인철 그 누적치예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누적치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현재 2022, 2023, 2024년도에는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당해 징수율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당해 연도 부과한 거를 징수한 거는 90%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김현 위원 다시 만드세요, 이것.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도표 다시 만드시라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두 종류로 만드시든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별도로 시정하고 할 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최수진 위원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김현 위원 예,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다른 건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시정만 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2쪽입니다.

예산 전용 시정 및 연가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본부의 총액 대상 인건비를 2024년도 예산 확정 전에 나름대로 방통위가 예측이 가능했던 전문임기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 소요를 전용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는 연가보상비를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유보를 해서 매년 연가보상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최민희 위원, 최형두 위원 주의·제도개선을 했는데요. 또 이주희 위원은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전문임기제의 경우는 23년 11월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증원되었지만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였기 때문에 추가 편성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전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전 부처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데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전문임기제 예산편성, 연가보상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어떤 분야였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변호사 5명하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1명 그다음에 이용자국에 1명, 그래서 7명이었습니다.

○**김현 위원** 변호사 5명을 왜 갑자기 늘린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그 당시 시장조사심의관이 신설되면서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직제가 개정이 됐는데 직제 개정일이 11월이다 보니까 편성이 되지 못해서 그 부분이……

○**김현 위원** 지금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변호사를 5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하고 있잖아요. 그 법정 제재에 대한 대응을 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시장조사심의관실에 있는 변호사는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는 일이 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시장조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네이버하고, 1년 넘게 네이버 가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1년 넘게, 지난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사이에 뉴스타파 잡으려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다른 조사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잠깐만요.

뉴스타파 잡으려고 했던 그 일이잖아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면서 이 변호사 5명이 급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또 소송 대리하고 있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얘기한 게 이 변호사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시장조사심의관실에 이렇게 과다하게 필요하지도 않고 방통위 직제에서 5명 변호사 이거 말고도 변호사 파견, 검찰에서 또 파견받은 게 있고요. 뺀 거잖아요, 그 인원이. 그렇지요?

몇 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시장조사심의관실에는……

○**김현 위원** 아니, 아는데 기존에 변호사가 방통위 안에 몇 명이었습니까, 2023년도까지? 2명 정도였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었

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현 위원** 이건 별도로 했으니까 이 인원이 플러스 5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 현재 토클 8명이잖아요, 방통위가? 그렇지요,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런데 지금 시장조사심의관실에 전문임기제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시장조사심의관실에 5명이 별도로 배치돼 있고 기존에 3명이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8명이잖아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시장조사심의관실이 언제 생겼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23년 11월에 생겼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23년 11월에 생겨서 변호사를 5명을 뽑았어요?

○**김현 위원** 예, 그게 배경이 가짜뉴스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2023년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시작한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런데 시장조사심의관실에 있는 변호사들은 시장조사를 위해서 뽑았고요, 지금도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뭐가 시장조사예요. 방송통신 시장조사인데 방송 시장을 조사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지상파방송 시장조사 하겠습니까, IPTV를 하겠습니까, 뭘 합니까? 토클 잡는 데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님, 가짜뉴스는 이용자정책국 소관이고요. 여기는……

○**김현 위원** 아니, 이용자정책국이 분리되면서 시장조사심의관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래서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이용자정책국이 분리돼서 시장조사심의관실을 만들어서 2개를, 통신심의관하고 통신분쟁심의관을 하는 데가 시장조사심의관실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잖아요.

○**이훈기 위원** 아니, 저도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변호사가 5명이나 필요하고, 그 정도의 업무나 일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현 위원** 이거는요 시정입니다, 시정.

○**소위원장 조인철** 시정을 받고요. 제가 봐도 시장조사심의관실에 변호사를 5명 두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채용 방식이나 채용 기준 등을 바꾸는, 사업 추진 방식을 좀 바꿔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시정을 지우는 것보다.

정부 측 어떠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님, 그런데 시장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시장조사심의관실은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40명?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40명 중에 변호사가 5명이라는 거예요? 직급이 어떻게 돼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5급 사무관 상당으로……

○소위원장 조인철 5급 사무관 상당?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현 위원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조사가 급격하게 필요한 사유가, 방통위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시장조사가 급증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2023년 11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급증……

○김현 위원 아니, 이용자정책국에서 다 하던 일이에요. 하던 일을 시장조사심의관실로 분리해 내서 일을 만든 거거든요. 규제를 강화시킨 거예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시장조사심의관실에 지금 국장급인가요? 심의관실은 국장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국장급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과장이 몇 명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4명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심의관실에 과가 4개가 있다는 거지요?

○김현 위원 누가 지금 국장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제가 시장조사심의관, 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과도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김현 위원 과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뭘 했는지 저희가 알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과는 4개가 있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예, 직위·소속 말씀하시고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국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심의관은 말씀드렸다시피 23년 11월 달에 조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고요. 주로 통신사업자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채용은 못 하고 저희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명 채용된 공무원들은 지금 통신시장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시장조사심의관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성과 낸 거나 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지금 구글하고 외국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부과 업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통 3사에 대한 금지행위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말씀하시지요.

○**김현 위원** 그런데 그걸 변호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일반 직원들도 하고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한 것을 어떻게 규율할 건가를 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업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글로벌 사업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기존 2022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넷플릭스하고 구글하고, 특히 유튜브 할 텐데……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이제 인스타를……

○**김현 위원** 국내 사업자들 지금 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다음에 통신사업자에 대한 게 그렇게 있었으면 지금 통신사업자 SK텔레콤 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방통위가 최근에 하나 나온 거 말고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건데 2023년 11월 달에 왜 갑자기 변호사 5명을 만들고 시장조사심의관실을 별도로 만들었느냐, 이거는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의제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시장조사심의관실에 다른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 말고 회계사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회계사는 채용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없는 상태고요. 변호사들은 지금 법률적인, 저희의 제재 명령에 대해서 글로벌 사업자들하고 통신사에 대한 법적인 쟁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시장조사과하고 부가통신지원팀에 지금 변호사가 투입이 돼 있고 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법률을 대응하는 변호사가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심의관 쪽에서는 지금 법률적인 다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지금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잠깐 미루시고 그 심의관실에서 뭘 했고 변호사들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빨리 만드셔서 여기 두 분한테 아니면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거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3쪽입니다.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요청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관실 일반회계 예산인데요.

불법적 2인 의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에 대해서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외상계약의 일환인 미지급 방식으로 소송비를 계속 지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정아 위원은 징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행정청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국가소

송법 등 법령에 따라 소송의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소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만 계약하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완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지금 이 담당 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저희 소송팀에는 3명 있는 것으로……

○**김현 위원** 그렇지요. 3명이면, 정당도 변호사가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국에 상근하는 변호사 3명이에요.

지금 방심위의 법정 제재 남발로 방통위가 행정청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고, 두 번째 2인 구조에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혈세 낭비가 2024년도 5억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적어도 사무처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현황 파악을 해 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보고의 의무가 있어요, 청렴의 의무가 있고요, 적극행정의 의무도 있어요.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상임위원들의 정치 행위에 보조적 기능을 한 거예요. 용산 부속실로 전락한 거고 방심위의 하부 기관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시정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말씀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소송의 구조가 2인 의결체의, 5인 합의체에서 왜 2인 의결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느냐를 둘러싸고서 쟁송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분은 2인의 결의 불가피했다고 결론 내린 경우가 있었고 상당수의 경우는 5인 합의체에서 2인을 통한 결정은 그 자체가 완전치 않다라고 해서 다 소송이 됐는데 아마도 방통위로서는 국가 소송법에 따라서 방통위 스스로가 어쨌든 2인 구조에서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이게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국가기관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5인 체제를 신속하게 복원해 주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송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다 그것이 왜 5인 체제에서 2인이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고요. 5인 체제로 했을 때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의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가 대부분 가처분 사건이나 소송의 내용입니다. 그 결정 내용의 적부라든가 결정 내용을 둘러싼 쟁점보다는 의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관한 문제 또 내부의 의결 구성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권한대행과 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국회가 빨리 3명을 추가로 지명해서 의결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넷플릭스 보면 법률 소송이 많은데 대개 추세가 소송 담당 변호사하고 그냥 일반 법률자문 변호사가 분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은데 내

부에 인하우스 변호사들이 있으면 인하우스 변호사들이 소송 절차도 더 잘 알 텐데 그 부분에서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하우스 변호사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송 대응 능력을 키워서 국가소송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말씀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이거는 제가 세부내역은 못 봤지만 소송 남발 같아요.

그리고 아까 2인 체제 얘기하셨는데 다 패소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소송 계속하고 있어요. 거의 다 패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징계해서 강력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형두 위원 제 의견이 뭐냐 하면 지금 요건상, 형식상 그렇게 보이는데 대부분의 것이 2인 체제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5인 체제여야 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된 데 대해서 우리 국회의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이거 2인 체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2023년도에 40건이 있었고 그것이 소송으로 들어온 게 2024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2인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의 방송장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예, 발언권, 마지막 하나.....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요, 잠깐만요. 너무 많이 하셔서.

이해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저는 지금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소송비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자총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방심위에서 오는 거, 방심위의 전횡을 그대로 받아 안게 됐기 때문에 다 패소하고 있고 그 방심위에서 온 소송 사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패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모르겠는데 2인 체제까지 다 합쳐서 항소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소송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 징계 필요에 대한 현재 어떤 소송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이 됐는지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지금 제기된 사항, 재판 있잖아요. 제기된 날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빨리 작성해서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현 간사랑 크게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무슨 문제냐 하면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당시에 여당 위원으로서는 최민희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법제처가 7개월 동안 미룬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법제처가 결론을 내리든지 국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이유를 따져서 빨리 해야지 그걸 자연함으

로써 우리 김현 간사가 지적했던 이런 2인 체제가 장기화되는 사태를 낳았는데……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지적했듯이 7개월 동안 그렇게 넘겼다 하더라도, 그건 정부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국회가 3인 전체를 계속 2년가량 공석으로 둔 책임도 있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김현 위원 아니지요.

○최형두 위원 아니, 그걸 추천할 수 있는데 왜 추천을 못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비……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오늘 회의 안 끝나니까 이걸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4쪽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사업인데요. 내역사업 중에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사업 지난해 40건 정도 용역을 했는데 이 중에 한 75.2% 정도가 경쟁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단독입찰을 통한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하거나 또는 시정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개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경쟁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고기간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방송통신 분야가 전문성이 높아 참여자가 제한적인 점, 하반기 과제 수행의 기간이 일정 수준 필요한 점 등을 시정요구 취지와 함께 고려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 해에 걸쳐서 지적됐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됐었는데요.

지금 입찰하게 되면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나요? KISDI 말고 들어오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단독입찰이 75%였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5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방송통신 분야 전문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중복도 많지요,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제목 조금 바꾸고 내용 조금 바꿔서 하는 것도 많지요? 혹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2008년 그 이전에 방송위원회부터 해서 방통위원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몇 년이지요? 17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수신료 통합징수가 분리징수로 될 때 분리징수가 효율적이다, 분리징수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단 한 건도 없었어

요, 2023년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구용역 맡긴 거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분리징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김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텐데 잘 분석해 보십시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요소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요. 논문으로 치면 복붙한 논문도 많을 겁니다, 제목 조금 바꿔 가지고 내용 약간 수정해서. 물론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연구용역 주는 KISDI에 대한 인건비 차원의 문제도 있고 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수요자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말 그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연구용역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자체 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는 제도 개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시정이, 지금 문제가 쪼개기 하신다는 거고 중복해서 하신다는 이 문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중복 용역.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들이 나름 연구과제 선정할 때 중복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된 부분은 수의계약이 많다는 부분 그리고 공고기간이 너무 짧다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주의를 해 주실 것을 좀 간곡하게……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많다는 얘기는 잘게잘게 쪼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전문 분야여서 연구하는 곳이 제한돼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이 높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의계약 여부는 주로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수의계약이라는 건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2개 이상의 경쟁업체가……

○소위원장 조인철 유찰돼서?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유찰돼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통계적으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김현 위원 제가 딱 하나를 예를 들었잖아요. 2023년도에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시행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용역연구를 할 때 2024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로 나와야 될 것이 분리징수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2024년도 결산 아닙니까, 2025년도 결산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2024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혹시 분리징수가 위대한 결정이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용역 안 맡겼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용역은 없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시정 받으시지요, 큰 문제없어 보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방송정책국 소관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EBS의 UHD 방송 장기 미송출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EBS의 UHD 전환을 위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KBS하고 EBS 간의 송신지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의견이 다르고 또 KBS는 재정 문제를 들고 있고 그래서 EBS의 UHD 프로그램 송출 건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UHD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대안도 검토해 보고 예산 투자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게 하거나 또 양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거나 아니면 시상과 UHD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라는 내용 등의 주의·제도개선·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정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시정 요구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UHD 전환 계획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도 KBS와 EBS에 대한 송신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앞으로 방송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정 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이거는 저하고 김현 간사님께서 지금 시정을 올린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우리 데이터로 얘기하지요.

UHD 제작비는 아시다시피 일반 포맷보다 2배, 광고비는 그대로. 시청자는 지금 전체 가구 2.8%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고비는 그대로 되고 있고. 저는 이거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KBS·EBS 갈등 지금 9년째 되고 있습니다. 1~2년이 아니고요 방치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시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 그냥 데이터만 봐도 이건 시정 이후에 사실 징계를 안 한 거를 좀 고마워하실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저도 과방위 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UHD 이게 지금 EBS만의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제 KBS 사장도 1조 원을 쓰면서도 여기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그리고 방통위는 여기 2조 2000억을 썼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콘텐츠 비용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가전사 TV만 팔아먹고 방송사는 돈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빨리 정책

적인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정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UHD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측에서. 그냥 받아들이시지요.

○**최형두 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

최형두입니다.

지금 이해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KBS 사장도 뜻밖의 이야기를 하길래 정부가 그렇게 돈을 썼는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왜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사가, 국가기간방송사가 이 문제에 소극적인가 봤더니 조금 전에 이해민 위원 설명에 잘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굉장히 방송사로서는 수익도 없고 그런데 정부로서는 초고화질,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Ultra High Definition) 이것을 해 준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아 보이고 가전회사로서도 새로운 텔레비전을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 같은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UHD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하고 주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UHD는 어느 나라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서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가전사 TV만 팔아먹고 지금 1~2%밖에 볼 수가 없어요, UHD. 그리고 HD 화질만 해도 다 만족해요.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TV를 못 보겠다는 사람 없거든요, 휴대폰으로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정책 실패고 방송사는 그러고 있는데……

아까 어제 박장범 사장도 얘기했잖아요, 주관방송사인 자기네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그럴 것 같아요, 돈도 많이 투입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정책결정을 방통위원회에서 빨리 해 줘야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에서 그렇게 검토가 좀 필요해 보여요.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UHD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방향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해외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현재 그것을 못 놓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받아들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수용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놓을 수 있습니까? 허가 승인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풀어주는 겁니까, 이게 방법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지금 이훈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방송계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조 27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생태계가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해서……

○**소위원장 조인철** 이훈기 위원님 말씀대로 TV만 팔아먹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영국 갔더니 영국 호텔에 나오는 방송에 보니까 UHD가 거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받아들이고 넘어가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도로 터널이라든가 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상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술도 지원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을 그 하위법령 개정 방향, 일종의 법률 검토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주의 또는 제도개선, 이주희 위원은 시정 요구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업 수행 기관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하는 데 일부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지금 제가 가격을 물어봤더니 1000만 원이래요, 지금 이 건이. 많이 쓴 돈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는 재난관리 지원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크게 벗어난 범위는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도개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도는 있는데 제도를 악용한 거잖아요, 적든 많든 간에. 1000만 원이면 방통위에서 큰돈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주의로 해 주시면 앞으로 보조금 사용하는 데…….

○**소위원장 조인철** 최형두 위원님.

○**김현 위원** 큰돈이에요, 큰돈. 1만 원, 2만 원이…….

○**최형두 위원** 저한테도 큰돈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제도개선 하지 말고 주의 하자고 그래서…….

○**최형두 위원** 주의가 더 낮은 거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더 높은 겁니다.

○**김현 위원** 시정보다는 낮고 제도개선보다는 높고 중간 단계입니다.

○**이해민 위원** 시정과 제도개선 사이에요.

○ 김현 위원 주의 하세요, 주의.

○ 최형두 위원 그런데 제도개선을 왜 중간에 딱 놔두었습니까?

○ 소위원장 조인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로?

○ 최형두 위원 주의가 더 센 겁니까?

○ 김현 위원 예, 제도를 개선할 건 없어요.

○ 최형두 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주의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입니다.

○ 이훈기 위원 잠깐만요, 여기 7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제가 계속 지적했던 건데 이것 제가 보좌진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여기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됐어요. 예산 지원하고 감독기관 불일치되고 그리고 방송통신 발전기금이 올해도 16%인가 줄고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 192억을 줬어요.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내지도 않아요. 내는 지역방송들, 40개 지역방송은 1년에 40억 원을 지원해 줘요. 지금 지역 소멸 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 중소방송들이 프로그램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돌려서 지역 중소방송한테 주면 1년에 한 4억 되면, 지역에 광주방송이 있으면 한 4억~5억 하면 그래도 지역 다큐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가서 뭘 취재를 해서 한 5억 정도 하면 그래도 그 방송의 존재 이유가 있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동안 여기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총 얼마 지원했어요?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총금액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아리랑국제방송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매년 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 이훈기 위원 제가 언제부터 지원했는데 5년 동안 1600억을 지원했어요. 1600억이면 지역 중소방송에 5억 원짜리 프로그램을 200~300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왜 여기다 돈을 퍼주고……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게,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기재부하고 맨날 업무 협의한다고 그러고 가서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래서 강하게 조치를 해야지 기재부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징계로, 저는 이것은 꼭 바로잡고 싶어요.

○ 소위원장 조인철 의견을 수정하시겠다는 거예요?

○ 이훈기 위원 예, 전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도 수천억을 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도 참 이훈기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데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리랑국제방송은 5년간 1600억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방통위 소관 기관도 아닌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내에서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리랑방송이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재단이기는 하지만 국가 목적을 위해서 해외 방송을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사실은 문화부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중에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 예산이 투입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송발전기금을 쓰게 됐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도 이훈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위성임차비 이런 부분들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기재부와 문화부랑 협의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여기 최민희 위원장이나 김현 간사님이 동의를 해 줘서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넘겼어요. 그리고 제가 문체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 가지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문화부에 얘기를 해서 일반회계로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올해 예산에 방발기금으로 또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까지 해서 바로잡아 놨는데?

그러면 편성할 때 방통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방발기금은 지역 중소방송 지원으로, 저번에 원래 여기서는 그렇게 의결을 했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돌리고 이거는 문체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2010년대쯤 됐을 것 같은데 산자인가요, 문체부, 기재부, 우리 방통위, 정보통신부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을 거예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정도는 이쪽 방발기금에서 나가는 데 프로그램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아, 반대인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반대였구나. 이 두 개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하는 거하고 인프라 지원하는 거하고 나눠 가지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지금 현재 방통위 직원을 그냥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 보이고 원래 이훈기 위원님께서 당초 제기한 대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게 어떠신가요?

○김현 위원 시정 가능하지 않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시정으로 하든지.

○**김현 위원**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이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시정 정도 하시지요.

○**김현 위원** 시정은 관계 공무원 책임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이훈기 위원님 어때십니까?

○**이훈기 위원** 시정으로 하고 편성할 때 저쪽으로 돌리고 그 방발기금은 지역 중소방송 예산으로 세워서 올리세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팩트체크넷 관련 사업 내용입니다.

이것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인데 사업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이 해산됐는데도 2024년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실집행은 1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사업을 중단했는데 다만 일부 금액 환수조치를 하면서 300%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조금 과도한 처분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또 인건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조치도 하고 제재부과금을 처분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지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큰 게 아니냐 그래서 제도개선, 주의 또는 시정, 징계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시정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누어서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이 건에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로부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목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조치 시정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피처분기관의 이의신청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4년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점을 고려해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팩트체크사업 관리 감독 부실 책임자 징계에 대해서도 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대상이 2020~2023년 사업으로서 24년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 보고 리뷰를 하면서 아까 보셨듯이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마 징계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립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는 방통위가 가장 정치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경우고요. 대놓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 죽이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변상 하려다가 지금 징계로 내렸는데 변상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징계로 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업자가 본인이 원해서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방통위에서 중단시킨 거고요.

계다가 징계 이유가, 이게 단가 산정 기준 문제였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방통위가 서로 넘기면서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를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은 채로 그사이에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변상 아니면 징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팩트체크넷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입니다.

일단 저희가 7월 15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요. 관련해서……

○김현 위원 아니요, 팩트체크넷이라는 빠띠 이것 말고요. 팩트체크넷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일단은 팩트체크넷 사업 자체는, 이게 결국은 온라인상의 정보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편향성 논란이라든가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팩트체크 부분은 가급적이면 향후에는 민간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방통위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현 위원 아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냐고. 2019년도에 예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현 위원 그러면 방통위 책임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김현 위원 그것은 방통위 책임이잖아요. 그렇지요? 방통위 책임인데 왜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책임을 묻고 그 직원을 강등시켜서 광주에 내려보내고 빠띠에다가 책임을 묻습니까, 정책을 위반한 게 방통위고 국회인데. 번지수가 틀린 거잖아요. 약한 자 괴롭히는 게 방통위입니까?

그것도 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자체 감사 해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 나오자마자 보고해서 그다음 김태규 부위원장한테 보고해서 7억 4000만 원 중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과징금이 아니라고 지금 앉아 계시는 신영규 국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거짓 보고까지 하고.

과징금으로 나갔잖아요, 지금 빠띠한테. 그런데 과징금이 아니라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민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점점 체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은, 사실은 이것은 시정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 부실한 책임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청의 책임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최종 책임자는 이진숙이고요. 그리고 관련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로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징계를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김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당시에 팩트체크 사업을 하면서 빠띠에다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라고 지침을 주지 않은 방통위 담당 부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담당 부서 공무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은 다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본인이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누구? 이진숙?

○김현 위원 아니요, 지금 부당심의위원장이 본인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이해민 위원님하고 이주희 위원님께서 징계를 요청하신 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넷 관련하여 관리 감독이 부실한 책임이 있으므로……

○김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다른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담당 공무원 징계를 해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김현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하고 공무원하고 책임자가……

이 부당 징계를 내린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고요, 결정한 것은 김태규하고 같이 한 거예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법상 징계는 이진숙 위원장은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김현 위원 아니, 부대의견으로 다는 거지요, 그것은.

○소위원장 조인철 부대의견으로 다는 건 괜찮은데 징계 대상이 안 되고 결국은 담당 실무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법상 징계는?

○김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자라고……

○소위원장 조인철 그 담당 책임자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담당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실무자가?

○김현 위원 저분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때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그리고 담당 사무관 그렇게 됩니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적용을 잘못시킨 게—2025년 1월 달에 감사 결과를 가지고—부당심의위원회지요? 이름이 뭐니까, 신영규 국장님? 본인이 위원장 맡았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 결정을 지금 앉

아 계신 국장이 한 거예요, 담당 실무자자가 한 게 아니고.

○**소위원장 조인철** 팩트체크넷 이 사업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어요? 어디 위임사항인가요?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업 자체는 2020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2020년에 시작해서 사업 결정을 누가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2019년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회에 올라갑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당시에는 한상혁 위원장 계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는데, 위원회 의결사항이에요?

○**김현 위원** 예, 의결사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산 반영은 당연히 위원회 의결, 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보고사항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소위원장 조인철** 보고만 하고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지요.

5인 합의구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산을, 방통위 안을 만들 때는 위원회에서 의결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담당 공무원은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무처에서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집행할 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김현 위원** 아니에요.

○**이해민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조인철**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김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얘기한 게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명확히 하시자고. 그러니까 위원회 결정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집행한 건지 집행을…… 아니,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집행 책임만 있는 건지. 징계를 하려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민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갑자기…… 어떤 업체가, 중소기업이 A라는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나중에 B라는 기준을 안 맞췄어라고 하면서 사후에 징계가 들어간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사후에 징계를 했다고요?

○김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누구를 징계한 거예요?

○김현 위원 사업체.

○소위원장 조인철 사업체를 징계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과다 편성, 목적 외 편성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띠라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환수한 다음에 보조금법에 따라서 재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박충권 위원 제가 한말씀……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징계 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충권 위원 이 관련해서 실무자를 징계해야 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팩트체크넷이라는 것을 방통위가 운영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니, 웃지 마시고요.

○김현 위원 아니, 그것까지 가면 오늘 늦어진다고요.

○박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팩트체크넷이라는 게 성향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방통위가 팩트체크넷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어디인가를 제재하고 뭔가 징계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운영한 공무원을 또 징계한다는 것은 저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이 사업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통위에 예산을 태우고 그것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실무를 맡기고, 보조사업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맡기고 빠띠라는 사회적 협동기업과 그다음에 기자협회, 방송협회 이렇게 3개의 소위 언론 종사자들, 협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팩트체크넷이라는 플랫폼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 사업을 한 거고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6억을 줘야 되는데 3억을 줘서 2024년도부터 못하게 됐다고 해 가지고 문을 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하게 돼서 1월 달에 감사 결과가 이것은 부당한 인건비를 사용했다, 너네가 애초에 예를 들어 인당 1만 원을 써야 되는데 1만 6000원을 썼기 때문에 6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곱하기 3을 해서, 12개월 해서 곱하기 6 해서 저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300%를 과하게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 자체는 이 일이 옳았느냐 그르냐, 정부가 지원해서 간접하지 않은 제도가 맞느냐 아니냐는 것은 다른 차원, 별개로 가야 됩니다. 만약 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사안 중의 하나겠지요.

그러나 2025년도에 2024년도 예산을 놓고, 문을 닫았는데 과도하게 조사를 해서 과정금을 부과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도

과도하게……

이 문제는 탄압의 측면으로, 장악의 측면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방통위든 시청자미디어재단이든 관련 유관업체나 소속기관하고 일할 때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별백계해야 할 사안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빠띠와의 관계이고 그 주무 행정청인 방통위가 과도한 행정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박충권 위원** 잠시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이해민 위원이 먼저 손들었어요.

○**박충권 위원** 예.

○**이해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사업계에 현재 너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징계라는 것을 결정하면서 왜 내가 징계까지 생각했을까를 좀 적어 왔습니다. 적은 것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의 논리적 오점이 있지 아니하면 받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업체 이름이 나왔으니까, 빠띠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안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게 A라는 기준이었어요. 갑자기 감사를 하면서, B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을 들이밀면서 용도 외 사용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방통위에서 감사를 통해서 나름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처분을 할 때 아주 상반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내부직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빠띠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하면서 내부직원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는 빠띠의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해서 교부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00%. 이것은 완벽하게 방통위의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을 이유로 저는 담당자 징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하시지요.

○**박충권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향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해민 위원** 계약서가 있어요.

○**박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시각의,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요.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민 위원** 그것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A 기준하고 B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계약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아주 부당하게 징계를 한 건가요, 빠띠라는 업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중지했겠지요. 중지했잖아요, 지금.

○박충권 위원 아니, 중지한 것은……

○김현 위원 이의신청 수용했다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해민 위원 참고로 지금 계약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계약서대로 했는데 다른 기준을 갑자기 들이밀면서 ‘그 기준대로 안 했으니까 너네는 잘못했어’예요.

지금 산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서대로 일을 했는데 이런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누가 정부기관을 믿고 사업을 수주를 받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이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결정을 누가 해요? 변상 결정이나 징계 결정을 누가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빼띠에 대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보 조금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이전숙 위원장께 보고를 드렸고……

○소위원장 조인철 드려서 그분이 결정하셨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첫 번째.

두 번째, 기준 변경은 누가 했어요? 기준 변경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기준을 변경했다는 부분, 감사에서, 방통위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 결과에서 그 기준이 적용……

○소위원장 조인철 방통위 자체 감사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자체 감사였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자체 감사에서 기준을 누가 바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기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소프트웨어 임금 단가 기준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것도 보류를 하고 넘어갈 텐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이 기준 변경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경위. 그다음에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했는지 이걸 만들어 주시고……

○이해민 위원 이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받더라도.

○소위원장 조인철 예, 그러니까 그걸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할게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저도 의견은 징계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보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장님, 3건 보류 중인데 이제 다른 건 끝났습니다. 다만 부대의견 중에……

○소위원장 조인철 끝났어요? 4번 안 해도 돼?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4번, 방통위 수용……

○소위원장 조인철 변상을 수용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소위원장 조인철 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오전 중에 수용했습니다.

여기 부대의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발기금 고갈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제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방통위가 그래도 방발기금을 같이 집행하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이런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라라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발전기금의 고갈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관련된 부대의견에 대해서 방송발전기금이 공동 소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된 관리기관이 과학기술부기 때문에 부대의견의 문구에 '과기부와 협력하여'라는 표현을 넣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방통위 건은 의결 안하고 아까 자료제출 되는 대로 계속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와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요.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위 지적사항은 총 5건인데 전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다 수용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결할까요,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수용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수용하셨으니까 원안위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 및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명현 1건 있습니다.

3쪽, 1번 항목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도 실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교부한 결과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연구개발 출연금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 2개가 있는데 문구는 ‘주의할 것’으로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다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중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BS하고 EBS 자료입니다.

○김현 위원 다음에 하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에 해요?

○김현 위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거 배포만 해 드리고 다음에 하자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박충권 위원 다음이면 언제……

○소위원장 조인철 또 날 잡아야지요.

○최형두 위원 결산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KBS하고 EBS는 예결위에 안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냅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천천히 하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방통위 다 준비되셨나요?

○김현 위원 KBS는 들어와서 인사하고 다음에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돌아가라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해서.

○최형두 위원 어제 충분히 했지 않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데 이걸 또 법을 보셔야 되니까, 뭔 내용인지를 저도 못 봐

서.....

○김현 위원 지금 주면서 뭘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날림으로 해도 그렇지.

○소위원장 조인철 앉으시지요, 부사장님.

○김현 위원 왜 지금 줘요, 이거? 어제 해서?

○소위원장 조인철 어제 했잖아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KBS 부사장 김우성입니다.

○최수진 위원 어제 했으면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요?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소위원장 조인철 부사장님, 어제 이게 끝나서 자료가 이제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받으셨어요. 그래서 KBS하고 EBS 결산은 좀 나중에 하자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날짜 잡아 주시면 저희가 그때 오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이라도 한번 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국정을 위해서 연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비판해 주신 점 겸허히 수용하고요. 어제 말씀해 주신 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하여튼 미안하지만 다음에 한번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방통위 소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보류된 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아까 보류했던 내용이 일반회계 본부(총액대상) 인건비, 전문임기제 공무원 증원했던 내용 관련해서 시장조사심의관실의 변호사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 방통위의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자료 가져오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예, 가져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자료 배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3쪽의 소송비 외상계약 관련해서.....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차근차근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하나씩.

○소위원장 조인철 다 배포되셨나요?

정부 측에서 우선 시장조사심의관 내 변호사 주요업무 설명 이것부터 해서 차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입니다.

시장조사심의관 내 변호사 주요업무 설명, 배포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심의관은 23년 11월에 신설된 조직이고 현재 3과 1팀, 32명으로 배속돼 있습니다. 각 과·팀에 변호사가 1명씩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조사기획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부가통신조사지원팀으로 3개 과 1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과·팀별로 변호사가 1명씩 배속돼 있습니다.

변호사 필요성은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법제 업무 때문에 저희가 전문 임기제를 채용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안에 있는 걸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를,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담당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점검·조사 및 시정조치를 조사관으로 배속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 점검·조사 수행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위반 법률 검토와 기타 통신분야 법령해석이라든가 유권해석 요청 등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최종 방통위에서 심결 지원할 경우에 금지행위 위반 등 방통위 안건 및 심의의 결서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서 심의·의결의 적정성·적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 소관 법령 및 타 부처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용자 보호 및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배속돼서 이분들이 수행했던 주요 업무수행 실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각종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심결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뭘 했냐고요. 변호사들이 뭘 했냐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일단 설명을 좀 듣지요. 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현 위원 이건 아니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소송비.

○소위원장 조인철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김현 위원 이거 아니에요. 별개예요.

아니, 그래서 뭘 했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수행한 내용이 마지막에 정리된 표로 이 변호사들이 배속돼서 했던 업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다섯 분이 시장조사심의관실 내 업무 이외에 일반적인 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대리하거나 거기를 지원하거나 한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없습니다. 4명은 저희 시장조사심의관 업무 역할만 하고 있고요. 1명은, 지금 5명이 전문임기제인데 시장조사심의관이 이용자국에 소속되다 보니까 이용자국에 있는 통신분쟁조정팀에서 그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고 시장조사심의관에 배속된 4명의 변호사는 본인의 고유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말씀하십시오.

○김현 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 이전에 이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이 업무는 이용자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시장조사 업무 이런 것이 강조가 돼서 조직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2008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통신시장과 분쟁이, 통신 시장 분쟁이 그때는 훨씬 더 많았었고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장조사 업무가 많았으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업무는 누가 했냐고요, 그러면? 변호사가 5명이 오기 전에 이 업무가 없었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용자정책국 안에 다 있었던 업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예, 맞습니다.

○**김현 위원** 그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그것은 일반 직원들이 했었고요.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시 되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이 인원을 배정받게 된 것입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변호사가 이것 말고 3명이 또 있잖아요. 그 이전에 방통위에 변호사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3명.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늘 방통위에 변호사가 부족했고 사실은 일이 많아져서 직원들을 새로 채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의 약간 숙원 같은 거였으면 이때 사실은 확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2023년도 조직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설했고 거기에 적합한 인원인 변호사를 5명 더 추가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어쨌든 이 보고와 그다음에 이 소송은 관여하지 않았다. 3명이잖아요, 그 것은. 그렇지요? 이 3명이 한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지금 전문임기제 변호사들은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5명, 여기는 3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하면 되지 무슨 외부 변호사를 둬서 외상값을 쓰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변호사의 실력이 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되나요? 되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방통위원장이 변호사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어서 외부의 변호사를 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아시잖아요.

8명이잖아요, 전체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현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업무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전담변호사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하는 변호사가 3명이 있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지금 저희들이 소송……

○**김현 위원** 기조관실에 소속이 돼 있지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송팀에 지금 3명이 있고……

○**김현 위원** 소송팀은 기조관실이지요, 여기 담당은, 배속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김현 위원** 아니, 어쨌든…… 검사는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변호사가 각 부처에 많이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몇 명 이게 아니고, 기재부만 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전문임기제 이런 비슷한 걸로 해서 다 뽑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대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 그런 업무가 일체 없다면 여기 필요에 의해서 뽑은 거고, 그렇다면 좀 너그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것, 오늘 검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정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와 관련해서요 변호사 또 별건이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것은 다음 꼭지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김현 위원** 예, 시정해야 됩니다.

○**최수진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시정이면 절대 안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님, 이게 전문임기제 채용할 때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시정하라는 거기 때문에 시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전문임기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인건비를 못……

○**소위원장 조인철** 인건비에 반영시키면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런데 전문임기제 예산은 반영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행안부에서 이미 티오를 받았는데 그걸 인건비를 확보를 못해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니까 예산 전용만 안 하면 됩니다, 시정하셔도.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저희가 23년도 말에 정부 예산편성 후에 이게 직제가 되다 보니 기재부랑 협의해서 24년도는 전용을 해서 한 거고요. 25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시정하시면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받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 저도 궁금했던 게 기재부랑 협의된 상태에서 전용을 한 거라는 것, 그게 궁금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그건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므로 그것은 어차피 이번 연도의 문제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작년도의 문제.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그것을 좀 듣고 싶었던 거고, 변호사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것은 시정 다 받는 걸로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송비 외 상계약 관련 정계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방통위의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이·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고 소송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4~25년 일부 수임을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건이 1억이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처분 취소라든지 시정명령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물론 방송 관련해서 이사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 직원 관련된 소송 그다음에 MBN, 저희가 옛날에 6개월 업무정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정보공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대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이렇게 계약은 하고 미지급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심위 관련된 소송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소송팀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법무부 지휘를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 지휘를 받기 위해서 방통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저희가 소송 결과가 나오면 내부, 위원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에서 항소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김현 위원 그래서 박찬욱 감사에 대해서 재항고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김현 위원 법무부 지휘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당시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저희가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현 위원 기한 내에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저희가 소송 해태가 될 수……

○ 김현 위원 해태가 돼서…… 나중에 법무부 지휘를 받으면 되는 거지요, 사후라도.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법무부,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 김현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임명이 되지 않아서 차관이 직무대행 하고 있을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법무부장관이 내정이 됐고 인사청문을 통해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럼 기간 때문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니, 항소를 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 기한 내에 저희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항소 여부를 결정……

○ 김현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 지휘를 받았느냐고요.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 위원 하라고 그렵니까, 그러면? 재항고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법무부 지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 위원 그때 당시가 법무부차관 직무대행 때입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 김현 위원 맞지요. 장관 임명되기 전이잖아요.

그런 건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럼 지금 2심 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 지휘, 예를 들어서 시점으로 보면 2025년 1월 17일이고요. 지금 넘어선 것 있지 않습니까? 시정명령처분 7월 21일 거 2심, 이거 신청일이 7월 21일이라는 거지요? 이게 다 법무부장관 임명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앞으로도 저희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 김현 위원 그러니까 몇 건 있습니까, 법무부 지휘를 받는 건수가?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모든 행정소송은 다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 위원 아니, 지금 40건 플러스 14건 중에 2심으로 종결되거나 나머지 대통령이 지시해서 종결된 사건이 있고요. 진행 예상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저희가 임원 소송 관련해서는 가집행까지 포함해서 11건이 지금 현재 1심·2심 이렇게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총 66건입니다.

○**김현 위원** 정리하세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제출했던 서류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방통위가 2심으로 가야 될 거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될 건지가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이 소송 미지급 내역을 보니까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것하고 그다음에 제이티통신, 매일방송, YTN DMB, 제이티비씨……제이티비씨가 더 먼저였네.

제이티비씨하고 제이티통신은 다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통신사입니다.

○**최형두 위원** 제이티비씨는 다른 문제고.

YTN DMB, 구글코리아, 제이티통신, 매일방송, 이것은 방통위가 적절한 시정조치 규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사자들이 반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오거나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소송 대응을 할 수밖에 없던 사안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소송비용 같은 게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가 25년도 내역 기조관 일반수용비 내에 소송비 내역이 0원이기 때문에……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목이 있고, 그것은 이해가 되고.

다음에 보니까 주로 직위해제, 직위해제 취소는 KBS 감사 박 아무개 씨 그분 이야기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내부 직원 견입니다.

○**최형두 위원** 내부 직원 문제입니까, 방통위 내부?

○**소위원장 조인철** 여기 있는 게 전부 내부 직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아닙니다. 일부 이사해임 처분 취소 말고 직위해제 취소 말씀드린……

○**최형두 위원** 이것은 사실 국회 외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2인 체제가 계속 지속됨으로써 2인 체제 속에서도 방문진 이사와 EBS 사장이 임기가 다 끝났는데 임기가 끝난 사장에 대해서 또는 이사에 대해서 부득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국회가 3인을 충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하니까 당사자들이 처분 취소, 가치분 신청을 냈고 가치분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2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소송에서 가치분을 인용하거나 또는 본안 소송으로 가는 상황이어서 이는 국가소송법상이라든가 부득이하게 부처의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 소송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최형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기관으로서는 어쨌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일 징계를 하라고 그러면 국가 부처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 같은 건데.

그리고 또 하나, 구글코리아 이런 것이 안 됐던 이유는 지난번에 기관 비용,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2025년의 경우는 당연히 구글코리아하고도…… 구글코리아는 그때 없었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2023년 그때는 예산 감액되기 전인데 왜 없었을까요, 구글코리아 부분은?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날짜는 소 제기일입니다.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다가 이겼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성공보수네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이기게 되면서 성공보수를 미지급하게 되고. 또 하나는 상대편이 항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또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니까 비용을 지금 구조상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지급 형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네요.

우리가 아마 오늘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내용 중에 구글코리아, 이게 아마 유튜브라든가 이런 규제에 관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최형두 위원** 그런데 빅테크들은 소송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써서 소송에 들어오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 규제라든가 적정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돼서 빅테크의 엄청난 소송에 정부가 맞대응하는 소송 비용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네요.

그래서 저는 징계로 간다는 것은, 정부 부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소송 행위를 한 것이고 또 그 비용이 정부 예산 감액 등으로 없어서 그걸 공짜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부득이하게 발생된 상황인데…… 더구나 여기에 5인 체제의 문제, 2인 체제가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시정요구를 징계로 하라는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하라든가 이런 건 수용할 수 있지만 징계라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이것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어 있는 건들이에요, 이동관·김홍일·이상인·이진숙·김태규 다.

○**최형두 위원** 다 2인 체제의 문제 때문에……

○**김현 위원** 2인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독임제로 운영했고 법원에서 2인 구조에서 결정하지 말라고 판단 내리면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제재 가한 것.

지금 이게 왜 미지급금이 됐냐면 아시잖아요. 지급한 건들, 2023년도에 남발한 법정제재에 대해서 2024년 1심으로 했던 40여 건을 먼저 지급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미지급이 된 거예요.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 기구처럼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행정청이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방송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바이든 날리면 내지는 김만배·신학림 이 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다 법정제재를 가하니까 소송 들어가서 다 패소했던 그 건이에요, 2024년도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걸 얘기하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다른데 왜 그 문제를 예결소위에서 제기하느냐…… 그래서 올해가 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를 주든

시정을 하든 제도개선을 하든 주의 조치를 하든 올해 나온 거고 지난해에 부대조건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거고 올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겁니다, 시정요구를.

○**소위원장 조인철** 이게 외상으로 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외상으로 한 건 잘못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에.....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을, 예산에도 없는 것을 집행한 것은 일단 잘못한 거지요?

○**김현 위원** 잘못한 거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게 잘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은 소송이 들어오면.....

○**소위원장 조인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다 소송 대응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제기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들이 대응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 대응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2024년도 계?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대부분 다 대응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대응한 거라는 거지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다예요? 지금 여기 몇 건이에요? 24년도 8건.

○**김현 위원** 이게 지금 다 미지급금이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미지급금인데 이게 소송에 대응한 거예요, 제기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대응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전체 8건 다 대응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최형두 위원** 다 대응이지요.

○**김현 위원** 아니지요. 구글코리아는 대응이 아니고 소송한 거지요.

○**최형두 위원** 성공보수고.....

○**소위원장 조인철** 다시 확인할게요. 대응한 거예요, 아니에요?

○**김현 위원** 소송한 것도 있지요.

○**최형두 위원** 다 대응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보기에는 다 대응한 걸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확실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최형두 위원** 다 대응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규제를 하니까.....

○ 이해민 위원 발언 요청……

○ 소위원장 조인철 이것 알고 이제 말씀하십시오.

○ 이해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는지 방통위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해 온 것 자체가, 조금 이따 빼띠 쪽도 마찬가지인데 괘씸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맥락이 왜 외상 처리를 하게 됐는지 그 맥락이 중요한데 40건 있고 한 것은 다 빼놓고 달랑 징계를 피하기 위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들고 왔어요. 이미 돈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맥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만 들고 온 것은……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제가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한번 내 볼게요.

지금 황정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과도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무슨 방송 제재해 가지고 이상한 것들 많이, 우리 그때 당시 야당 시각에서 보면, 지금 여당 시각에서 보면 이상한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왜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했을 때 누가 징계를 받냐면 결국은 또 실무자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만 다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제기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밑의 시정요구사항에 잘 정리해 놨어요, 보면. ‘이를 사실상 강요한 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강요한 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 하면 어때요?

○ 김현 위원 징계도 과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있어요.

○ 소위원장 조인철 징계는 공무원법상 징계이기 때문에 빨간 줄이 올라갑니다.

○ 박충권 위원 동의합니다.

제가 한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김현 위원 빨간 줄이든,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감옥보다 더한 죄예요, 이게.

○ 박충권 위원 우리가, 국회가 예산도 다 삭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들이 들어오게 되면 방통위가 이걸 다, 소송을 맞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는 좀……

○ 김현 위원 양보하세요. 양보하셔야 돼요.

○ 박충권 위원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한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는 것은……

○ 김현 위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정했다고 두 공직자가, 30년 공무에 관여했던 사람이 감옥 갔다가 나와서 지금 전 재산을 다 털어 넣고 변호사비를 쓰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유능했던 한 사람은 지금 감옥 갔다 나와서 보석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어요. 그게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거예요, 2023년도에. 그게 2024년도예요. 2023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을 2024도에 쓴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 직원들은 범법행위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2024년도 5월 30일 날 22대 국회 들어어서 일관되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거예요. 그것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봐주더라는 관행이 생기는 겁니다.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직원과 60명의 직원이 참고인으로 해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년, 내후년까지 가요. 그게 방통위의 현실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료들이고 후배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내용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무한한 정권 아니었어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명의 위원장 탄핵을 발의했던 거예요. 불법행위에 더 이상 국가공무원들을……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두 분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제안했으니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저는 김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동의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징계를 해야 된다?

○**이훈기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중재안에 동의합니다.

○**최형두 위원** 중재안 취지를 존중하는데 김현 간사님 말씀도 맞아요.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첫 번째는 TV조선 승인 점수 조작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한 뒤에 감안해야 할 것 같고 그 경우는 정말 불법행위에 가담한 문제 여부가 판단되겠지요.

또 하나는 이런 소송을 할 때 아까 법무부의 지휘 이야기했는데 법무부의 지휘와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희들이 소송 대응할 때는 항상 법무부의……

○**최형두 위원** 공무원으로서는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서 다 결정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법무부가 국가 소송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 소송을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말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법무부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따랐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구글코리아라든가 몇몇 사안 보면 방통위가 할 수밖에, 해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소송 비용의 부족 등으로 생긴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이사 해임 이것도 이사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이사를 임명했는데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따를 수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부득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이건 근본적으로 2인 체제의 발생 원인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협의한 중재안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위원 저 잠깐만요, 이것 한마디만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잠깐만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저분들 없어도 우리끼리 논의해도 될 사항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보류한 상태로 넘어가고 다음 사항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김현 위원 아니, 이것 바로잡아야 되는 게 이 소송이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2인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하다가 아니라 임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임기가 유지되는 겁니다, MBC 방문진과 EBS가.

그래서 이게 불법하다가 아니라, 2인 구조 때문에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임기가 유지된다는 건 여기 있는 방통위 직원들 다 알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법정제재 가하고 그건 처리……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박충권 위원 그럼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해민 위원 이다음 것도 당사자들이라서 그냥 아예 지금부터……

○소위원장 조인철 다 빼까요?

○이해민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 건 관련해서 일단 설명은 듣고 가시지요, 자료 가져오셨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팩트체크넷 설명만 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가 팩트체크사업 자체의 추진 경과고요. 그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2019년에 방통위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2023년 1월에 팩트체크넷이 해산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당시에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두 번째, 보조금 환수 및 진행 관련해서는 결국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준이 바뀐 게 왜, 누가 바꿨냐 이 말씀 하셨는데요. 그게 보니 사후적인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자체감사 결과 팩트체크사업 관련해서 빠띠에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허위정산 등 부정수급 사실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이용자정책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용자정책국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 그리고 보조금 환수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부가금 부과하는 조치까지를 진행했고 지금 이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최수진 위원 있을 때 하나만……

감사 결과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정도면 과연 이런 징벌을 한 게 맞는 건지 그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인건비

용도 외 사용 1억 6000만 원, 도서 구입 40만 원, 주차료 허위정산 이런 걸로 이렇게 해체하는 게 맞는 건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보조금법에 따르면 인건비를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수진 위원** 무조건 가능한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보조금 교부 취소하고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법으로 아예 그게 정해져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300%를 물어보셔야지요.

○**박충권 위원** 이게 5배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것 아닙니까?

○**최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했느냐……

○**김현 위원** 이내는 100%도 되고 200%도 되는 거예요.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김현 위원** 최고 수위로 한 거예요.

○**소위원장 조인철** 저도 질문 좀 할게요.

이게 감사 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후적으로 감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사후적으로 감사가 지적을 했는데 감사가 지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부당한 법적 위반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미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용했다, 타당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실은 이게 사업 자체가 2022년에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감사에서 그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거라서요. 저희가 사실 그 이후에 기준을 바꾸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조인철** 기준을 바꾼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잣대는 이걸로 맞았는데 기준을 바꿔서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예전 것을 재단을 해서 내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게 맞는 거예요? 감사가 잘못됐다라는 항의는 해 보셨어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자체 감사했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자체 감사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감사가 끝났고 A라는 기준도 방통위에서 나간 기준일 텐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거를 새로운 기준, B라는 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서 이걸 적용을 왜 안 했느냐라고 하고 환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거는 일단 합리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준을 바꿨다기보다는 인건비를 결정

하는 데, 인건비를 책정할 때 사업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을 한 거고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 쪽에서 지적한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고 인건비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어쨌든 간에 기준이 바뀐 거고.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현 위원** 여기 감사팀이 누구였어요? 내부 감사입니까, 아니면 파견 나온 감사팀으로 운영된 감사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김현 위원** 아니요, 알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유석균 감사담당관이……

○**김현 위원** 몇 명이 한 겁니까, 이거? 몇 명이 했어요?

신영규 국장님, 몇 명이 했어요, 이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제가 감사를 몇 명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김현 위원** 그것도 모르고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장 해서 내외 인사 5인으로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감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보복이잖아요, 보복. 보복한 거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방통위에서 오신 분들은 수고하셨고요. 가셔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나중에 의결하실 때는 또 있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의결할 때는 있는데 일단 나가 계십시오.

○**김현 위원** 의결을 안 할 수 있어요. 의결 못 해요, 이거.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일단 밖에 대기하라고만 좀……

○**김현 위원** 의결 못 해요.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방통위 2024년도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오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의결합니까?

○**이해민 위원** 제가……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정리 좀 한 다음에 할게요.

지금 이제 2건 남았어요, 방통위. 저희가 오늘 4개 부처인가 3개 부처인가 해서 다 끝났고 KBS하고 EBS는 다음에 하기로 했고 지금 방통위의 2건만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자료를 충분히 받았고 했으니 이거를 한 번 더 보시고 다음에 모여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인가 이거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민 위원 의견을 좀 들어 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방금 전에 방통위에서 인정을 했듯이 감사를 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이전 기준을 지킨 게 잘못됐다라고 된 건데 이전 기준을 왜 지키게 됐는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빠띠에 기준을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에 의거하여 하라고 이메일이 갔습니다, 첨부파일과 함께. 2020년 10월 8일 날 또다시 빠띠에게 어떻게 연락이 갔냐면 여기에서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라고 안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5일 빠띠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은 지난주에 저희가 상임위원장에서 방통위에서 받아 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빠띠는 당시 그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면 오히려 난리가 났겠지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했더니 이제는 급여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는 300%의 과정금을 물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표적 수사에다가 완전히 보복 수사고요.

○최수진 위원 왜 보복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해민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전용한, 만 원 단위까지 따져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다 떠나더라도 지금 방통위에서 내놓는 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함께 시행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국내의 어느 사업자가 공공사업 특히 방통위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협약서, 계약서인데 그걸 믿고 들어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감사부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진행하던 그 시점부터의 담당자,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7억 얼마 때렸는데 이후에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체는 다른 정부 관련된 사업에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손실금까지 따지게 되면 나중에 꽤 많은 금액이 또 산정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이 사실관계 더하기 우리나라 스타트 업계의 산업, 특히 공공사업 관련된 것까지 감안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상을 하려다가 징계로 내렸습니다.

○박충권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들에서, 연구실들에서도 국가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학생들 인건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에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고 나서, 당시에는 관행이 어떤 게 있었냐면 학생들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빼서 실비로 운용합니다. 이거 감사에서 걸리면 교수 날아갑니다. 지금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이걸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서상에서 평균 임금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했던 것도 있으니 그런 것들 참작해서 하면 징계보다는 김현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안 그러면 교수들 날아갑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감사는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민 위원 제 남편이 교수직을 15년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면 방통위원회를 날려야지 왜 일선에 있는 애매한 직원 하냐고요.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이해민 위원 지금 서로 다른 기준이 문제예요.

○ 김현 위원 아니, 한상혁을 고발하든 저를 고발해서 문제를 물었어야 된다고요.

○ 박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감사는 이거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계가 엄청 셉니다, 이거.

○ 이해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연구실에 대해서는……

○ 박충권 위원 연구소들 다 똑같아요.

○ 이해민 위원 저도 연구실에서 연구해 봤고 제 남편도 교수로 일을 해서 너무 잘 아는데요. 지금 포인트는……

○ 박충권 위원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그러면?

○ 이해민 위원 틀렸어요.

○ 박충권 위원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 이해민 위원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민간 업체하고 한 계약서를 국가가 지키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 박충권 위원 아니, 계약서 마찬가지예요.

○ 김현 위원 아니, 아니니까 위원장님 빨리 정해 주세요.

○ 박충권 위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연구실들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인건비 일이라고 책정하잖아요.

○ 김현 위원 연구실이 아니에요. 연구실이 아니라고.

○ 이훈기 위원 다음에 하지요.

○ 박충권 위원 연구실이랑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 김현 위원 연구실이 아닙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다 충분히 말씀하셨지요?

○ 김현 위원 충분히 말을 못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참겠습니다.

○ 소위원장 조인철 아까 과기부 부대의견은 나눠 드린 3건 추가로 이야기하신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 보셨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아마 오늘은 방통위 건은 의결을 못 할 것 같아요. 의결을 못 할 것 같고 다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9월 2일 날 전체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과방위가.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거를 의결을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예결위에 이걸 안 넘기고 우리끼리 뭉개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수고해 주신 부분이 전부 반영이 안 돼서 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있기 전에 한 번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 김현 위원 9월 2일 날 10시니까요, 9시에 시작하고 과방위 전체회의를 11시에 개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 소위원장 조인철 그때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의결까지 잡니다.

○ 김현 위원 의결이 아니라 표결이지요.

○ 소위원장 조인철 표결. 아시겠지요?

○ 최형두 위원 현명한 중재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그때는 안 되면 표결까지 가야 그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김현 위원** 이거는 핵심적인 일이에요. 방통위가 그동안 한 사업 중에,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

○**소위원장 조인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현 박충권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수진 최형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우

정책기획관 전영수

국제협력관 황성훈

비상안전기획관 황의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정택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감사관 김정기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장 오형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정창립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권석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한형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김우성

예산국장 유현성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김성동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경영지원센터장 곽태규